

		시 민	
문서번호	디자인정책과-1456	주무관	디자인자산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
결재일자	2012.2.14.	김운기	선현규 박종수 02/14 한문철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
방침번호		협 조	디자인자문관 홍군선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개선계획

2012.2

문화관광디자인본부
[디자인정책과]

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영 개선계획

건축물 미술작품제도와 관련 토론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미술작품 참여 작가와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기존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함

1 제도개요

□ 관련근거

-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
-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, 제24조, 제37조
- 시장 지시사항(현안업무 보고시, 2011.12. 29)

□ 설치대상

- 연면적 10,000 m^2 이상 신·증축 공공주택 및 일반 건축물

□ 설치절차



□ 미술작품 설치 현황(작품 종류별)

(기간 : 1995. 7 ~ 2011.12. 현재)

계	조각	회화	공예	사진	서예	벽화	미디어	분수대	기타
2,924	2,302	525	19	9	11	16	21	4	17

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
심의위원회 구성

- 임기 : 2년
- 인원 : 총 80명(위촉직 77명, 당연직 3명)

(기준 : 2011.12. 현재)

구분	조각	서화	한글화	평론	디자인	서예	공예	경관	기타	사원	당연직
80	29	7	5	3	5	2	3	7	11	5	3

- 위원구성 방법 : 매회 위원회 개최 시 13명 이내에서 윤번제로 구성
(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)

심의위원회 운영

- 개최주기 : 월 2회 개최(단, 접수 건 수가 5건 미만일 경우 이월)
- 심의방법
 - 작품별로 공개토론 후 각 위원별 채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·최저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작품별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시 승인, 70점 미만은 탈락

3 개선방향

- 다양한 종류의 우수 미술작품 설치
-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장소 다양화 유도
- 신진 및 젊은 작가 참여기회 확대

4 세부 추진계획

미술작품제도와 관련 토론회 개최

○ 목 적

-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단체, 학회, 작가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미술작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.

○ 추진개요

- 일 시 : 2012년 4월 중
- 개최 장소 : 아르코 미술관(대학로)

○ 추진방향

- 전문 발제자 3~4명이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
- 인터넷 동시 방송 등을 추진함으로써 여론 관심 유도

○ 발표주제(안)

- 미술작품 제도의 개선방안 및 공모대행 확대 방안
- 신진작가 참여기회 확대 방안 등

○ 추진계획

- (정책)토론회 개최 방침(관계부서 협조)
- 소요(확보)예산 : 2,000천원(외부강사료, 기타경비)
 - 관광마케팅 외부 수당 지급 기준 : 4인×300천원/1인당

미술작품 사후관리 개선

○ 미술작품 사후관리 실태(총 2,924점, 2012.12.30기준)

- 서울시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점검(점검 : 자치구)
-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존치 여부 정도만 확인
 - 2012년 정기점검 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 정비(폐지, 이전 등) 방안 확정

○ 사후관리 개선(안)

- 미술작품 설치 현황 표본 조사

-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(표본조사 대상 : 강남권 및 강북권 각 1개 자치구)

- 시민·전문가 합동 점검반 구성·운영

-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여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보수정비(폐기, 이전 등)방법 등을 제시(자치구 당 20개소 총 500점 표본 조사)

- 소요예산 : 6인×181,472(201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기준, 중급 기술자 기준)×9일 = 9,799천원

※ 2인 1조 3개조 편성, 1일 20개소 점검 기준

미술작품 Best/Worst Art 선정·발표

○ 방 법

- 설치된 미술작품 중에서 설치년도 Best/Worst Art 선정 및 발표

○ 기대효과

- 미술작품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관심 유도

- Best Art에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포상(인센티브)기준 및 선정기준 마련

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

○ 심의위원회 위원 일부 재구성(20112. 1.17 신규 위원 선정)

- 신규 위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당초 예상인원 57명 중에서 43명 선출

- 결원 인원(총 14명)은, 기존 위원이 소속된 단체를 지양하고 한국민족예술인협회 민족미술인협의회, 문화연대, 미술인회의, 새건축사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

□ 문화예술진흥기금 활용 방안

○ 주요내용

-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(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·시행 2011.11.2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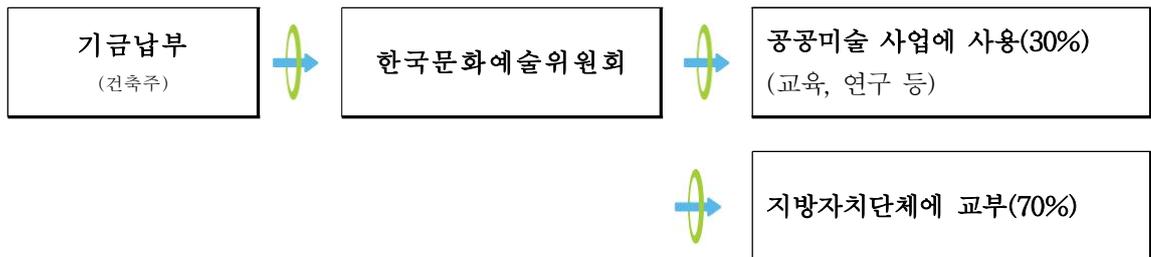
○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액 (시행령 제12조 제6항)

- 출연금액 산출 : 법정 산출가격의 70%
-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금 출연 불가

○ 2013년 이후부터 조성된 기금의 70% 정도를 “지방경상보조금”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예정

- 공공미술 사업 추진 시 신진작가 및 젊은 작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사업으로 추진

○ 기금납부 절차(예정)



□ 미술작품 설치위치 개선(다양화)

○ 옥외 공공장소(옥외 출입구 주변, 또는 일반 통행이 빈번한 곳)에 설치토록 권장

- 건축허가 단계부터 미술작품 설치위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인허가기관(부서)에 협조요청
-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협의 시 행정지도

○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미술작품을 가능한 한 장소에 집약하여 설치토록 권장

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

○ 공모대행제 활성화 방안

- 공모대행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인허가 기관의 공모대행제를 실시하여 작품을 선정한 경우 「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」의 감정·평가를 받은 것으로 하는 준용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 개정 추진 (조례개정안 제출, 2011. 1.13)

※ 미술작품 공모대행제가 확대될 경우 폭 넓은 작가 참여와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 기대.

○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가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제도적으로 문제점 도출 시 제도개선(건의)

○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신 납부하는 기금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조성가능하도록 법령개정

○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검토

5 향후 추진계획

미술작품 제도 (청책)토론회 개최

- 개최 장소 및 진행방식 협의 : 2012. 2월~3월
- 주제 발표자 선정 및 토론회 개최 : 2012. 4월

미술작품 사후관리 개선

- 전문가 점검반 구성 및 현장 점검 : 2012. 하반기
- 설치되어 있는 미술작품 표본 조사 : 2012. 하반기

미술작품 Best/Worst Art 선정·발표

- 선정(포상)기준 마련 : 2012. 4월~6월
- 후보작품 선정 : 2012.12월
- 당해연도 미술작품 Best/Worst Art 선정 : 2013. 1월

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

- 심의위원회 위원 일부(43명) 재구성 : 2012. 1.17
- (추가)위원 전문가 추천 의뢰(14명) : 2012. 2. 1

신진작가가 참여 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발

-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된 이후 공모사업으로 시행
(시행시기 : 2013년 이후)

미술작품 설치위치 개선(다양화) 추진

- 건축물 인·허가 기관(부서)에 협조요청 : 2012. 2.

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

-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: 2012. 1.13
- 미술작품 제도 토론회, 전문가 점검, 표본조사 결과 제도적 문제점
도출 시 제도개선 건의